


|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 <b>국토교통부</b> |        | <b>보도참고자료</b>        |   |
|  |        | 배포일시                 | 2019. 5. 10(금) / 총 2매(본문 2매)  |
| 담당<br>부서   | 자동차정책과 | 담당자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장 윤진환, 서기관 최수관</li> <li>• ☎ (044) 201-3835, 4996</li> </ul> |
| 보도일시   |        |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  |

##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자동차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자동차 안전확보를 위해 ①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②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시정조치(리콜)를 하고 있습니다.(자동차관리법 제31조)
  - 자동차 결함은 안전기준위반, 안전결함 2가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리콜은 대부분 안전관련 결함으로 '18년도 경우 총 283건의 리콜 중 251건으로 88.7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
    - 나머지 32건이 안전기준 위반으로 11.3% 차지
  - 자기인증제도를 시행중인 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안전 관련 결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
    - 총 914건 중 안전결함 763건(83.5%), 안전기준 위반 151건(16.%)
-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제작자가 판매전 스스로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제도로 제작자의 자율성 향상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리콜 등 강력한 사후 관리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
- 국토교통부는 제작자 인증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여 불합격시 신속한 리콜조치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, 대부분의 리콜대상인 안전관련 결함은 '별도의 결함조사'를 통해 확인하고 리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- 이와 함께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대상차종 선정의 객관화, 조사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리콜조치, 결함조사기관 (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) 역량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동차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.
- 더불어, 현재 제작자의 법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작자의 결함은폐·축소, 거짓공개, 능장리콜시 과징금을 매출액의 1%에서 3%로 상향조정하고, 자동차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자동차관리법 개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국민일보 16면, '19. 5.9(목) >

- ◆ 차 안전 자기인증 적합조사 통과하면 뭐하나...매년 무더기 리콜
  - 안전에 문제가 있는 자동차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고 형식적인 '뒷북조사'로 대응
  - 과징금도 제작사에 별다른 부담이 안되는 수준
  - 한국처럼 자기인증제를 운용하는 미국은 허위인증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수조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'징벌적 손해배상제'를 시행중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자동차정책과 최수관 서기관(☎ 044-201-499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